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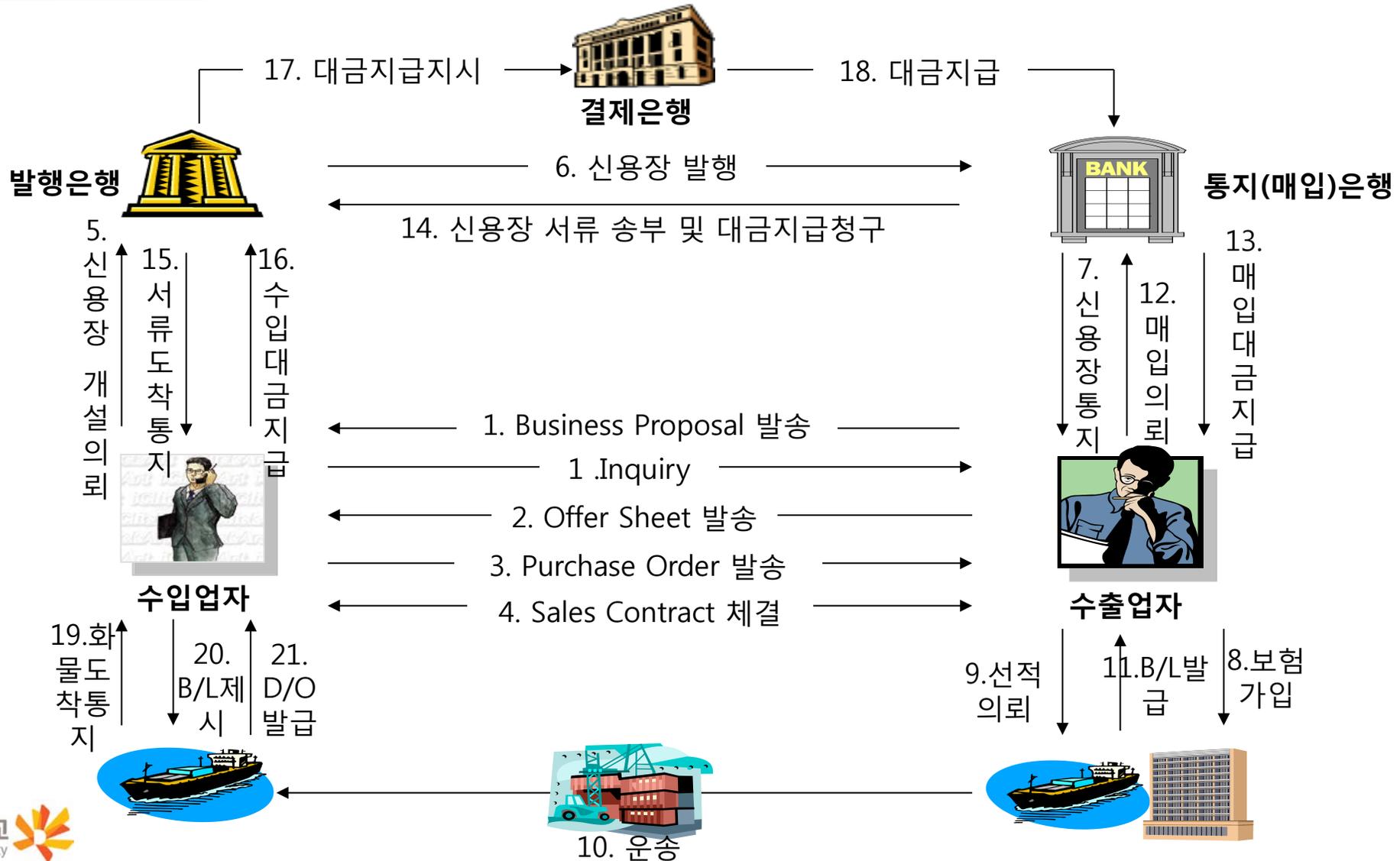
3. 수입절차

담당교수 : 유승균
bluetrade@dongguk.ac.kr

Contents

1. 수입도해
2. 수입절차

1. 수입도해



2. 수입절차

■ 수입절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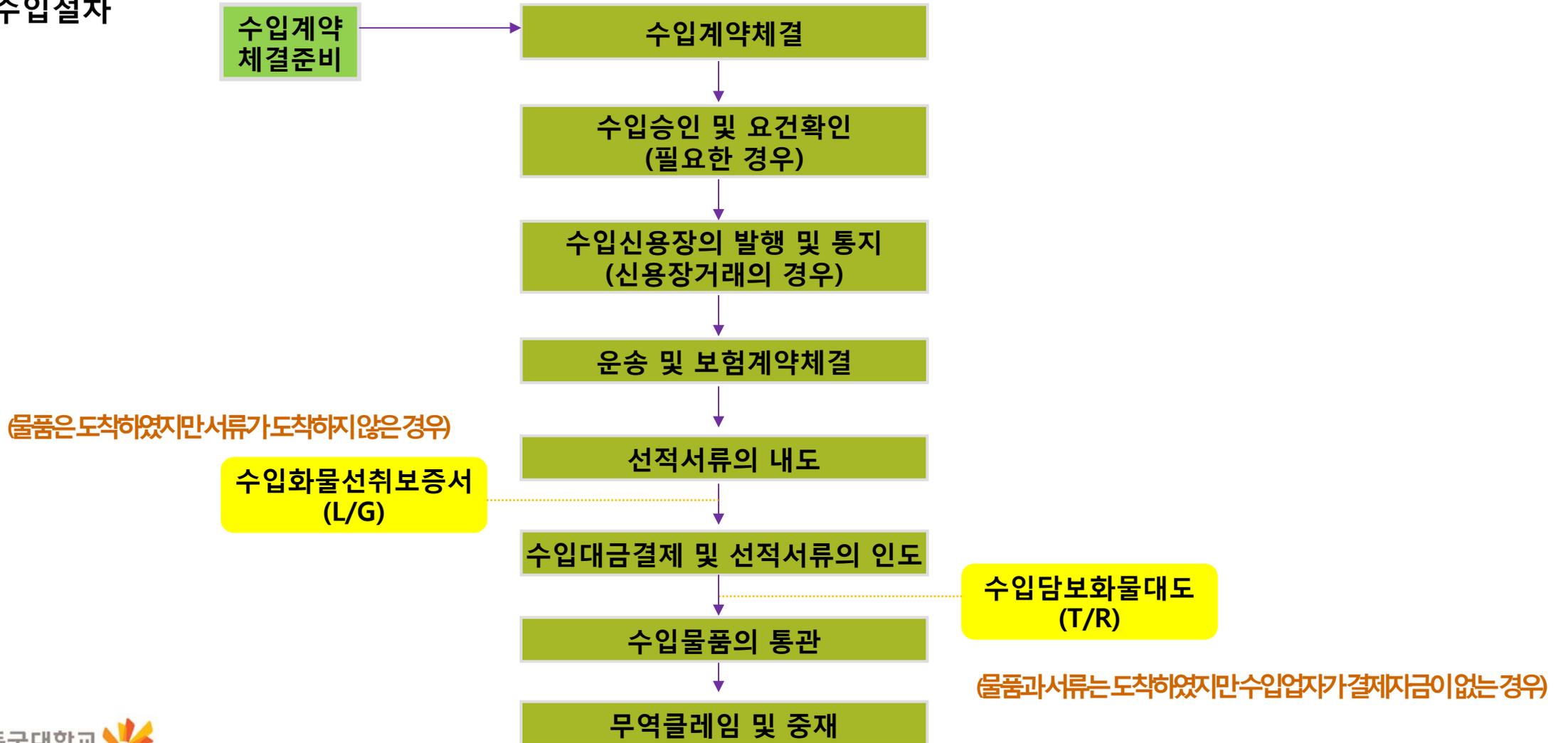
수입절차

- 수입업자가 수입이 허용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의 거래선을 선정하여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 및 기타 개별법에 따른 수입승인과 수입요건 확인을 받은 다음, 자신의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수입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발행하게 하고, 해외의 수출업자로부터 수입환어음 및 선적서류가 내도하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도받아 관세법에 의한 세관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령하는 것과 같이 한 건의 수입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거쳐야 하는 일련의 행정·법규적 흐름

- 이러한 제반 수입절차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기본사항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 수출대금결제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는 외국환거래법, 수출물품의 통관을 관리하는 관세법 등의 국내의 무역관련 법규와 국제상관습을 적용하고 있는 인코텀즈, 신용장 통일규칙 등의 일련의 국제규칙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따라서 수입업자는 수입에 따른 제반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입절차의 각 단계별로 가장 적합한 국내의 무역관련 법규와 국제상관습을 선택하여야 할 것임

2. 수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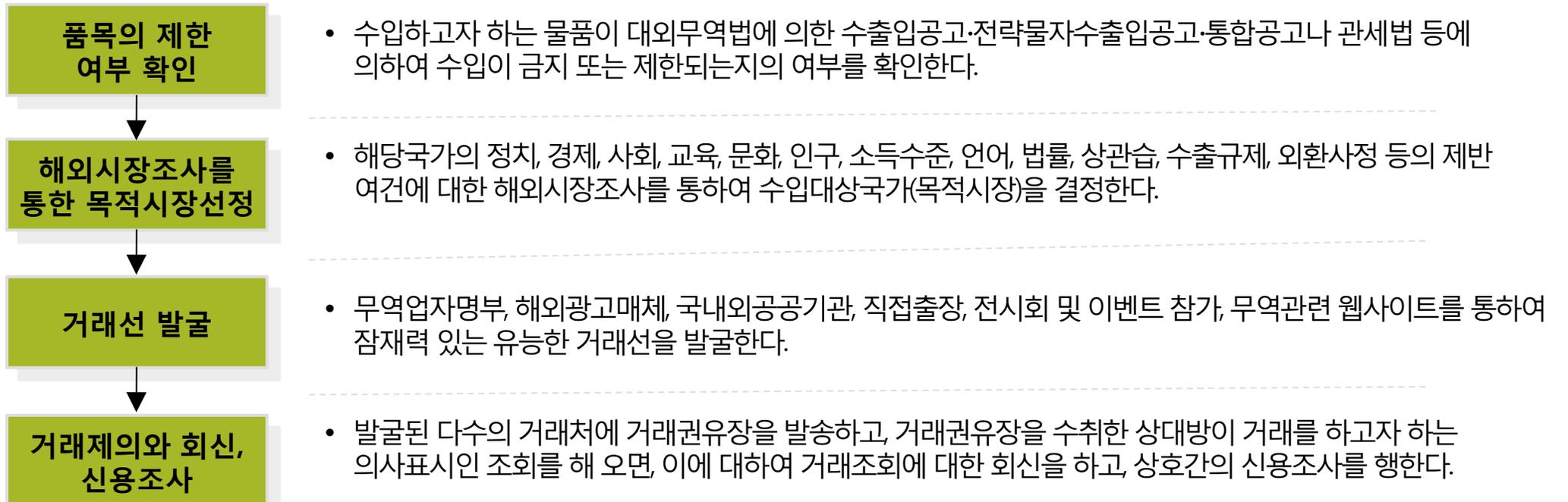
■ 수입절차



2. 수입절차

■ 수입계약의 체결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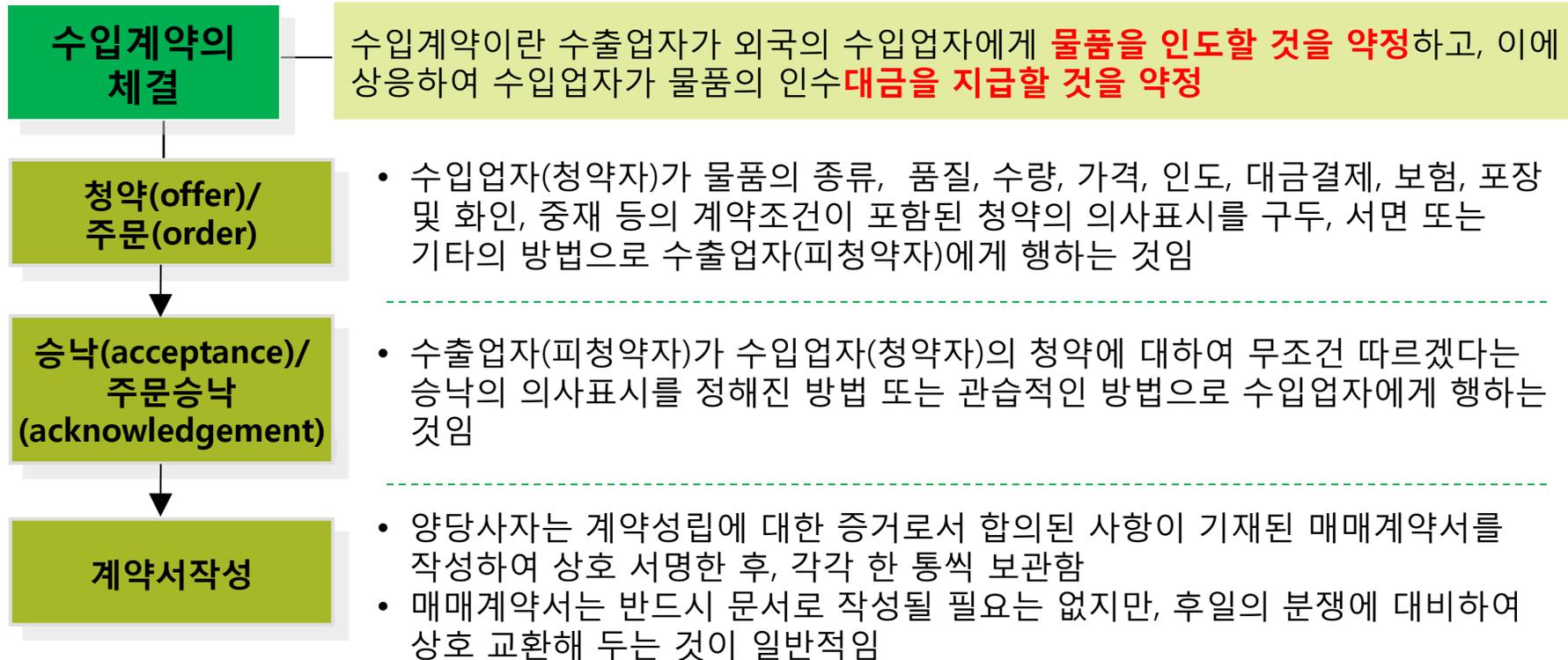
▶ 수입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국내 무역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국내의 판로나 판매형태를 결정하고, 해외시장조사 및 거래시장의 물색을 통하여 자국시장에 알맞는 물품을 공급할 수출업자를 발굴한 후, 그 거래선에 거래제의를 하고, 그 거래선으로부터 조회가 있다면 상호간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입계약체결의 준비를 한다.



2. 수입절차

■ 수입계약의 체결

▶ 수입업자는 수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거래선에 **구매청약(buying offer) 또는 주문(order)**을 행하고 이에 거래선으로부터 **승낙(acceptance) 또는 주문승낙(acknowledgement)**이 있다면 수입계약이 성립된다.



2. 수입절차

■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 대부분의 물품은 수입승인이나 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승인이나 요건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편, 수입금지품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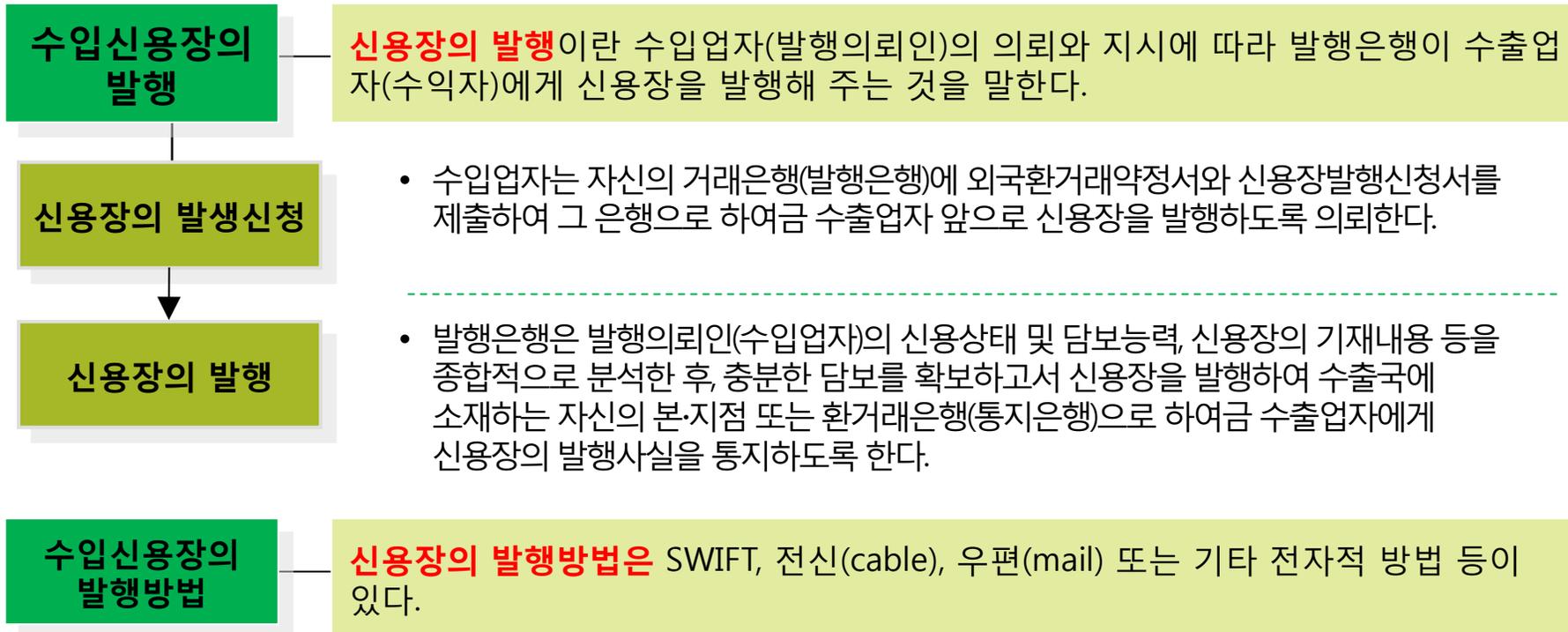
◆ 전략물자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특정물품이 수입승인대상이면서 요건확인대상인 경우에는 수입승인과 요건확인을 모두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2. 수입절차

■ 수입신용장의 발행

▶ 매매계약의 지급조건이 **신용장 방식**인 경우에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발행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발행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발행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2. 수입절차

■ 운송계약의 체결

▶ 계약에 별도로 합의되어 있지 않는 한, 운송계약이나 해상보험계약은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따라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의 하나가 체결한다.

운송계약의 체결

- ◆ FCA, FOB : 운송계약체결의무(수입업자)
- ◆ CFR, CIF, CPT, CIP : 운송계약체결의무(수출업자)

선적요청서 (Shipping Requ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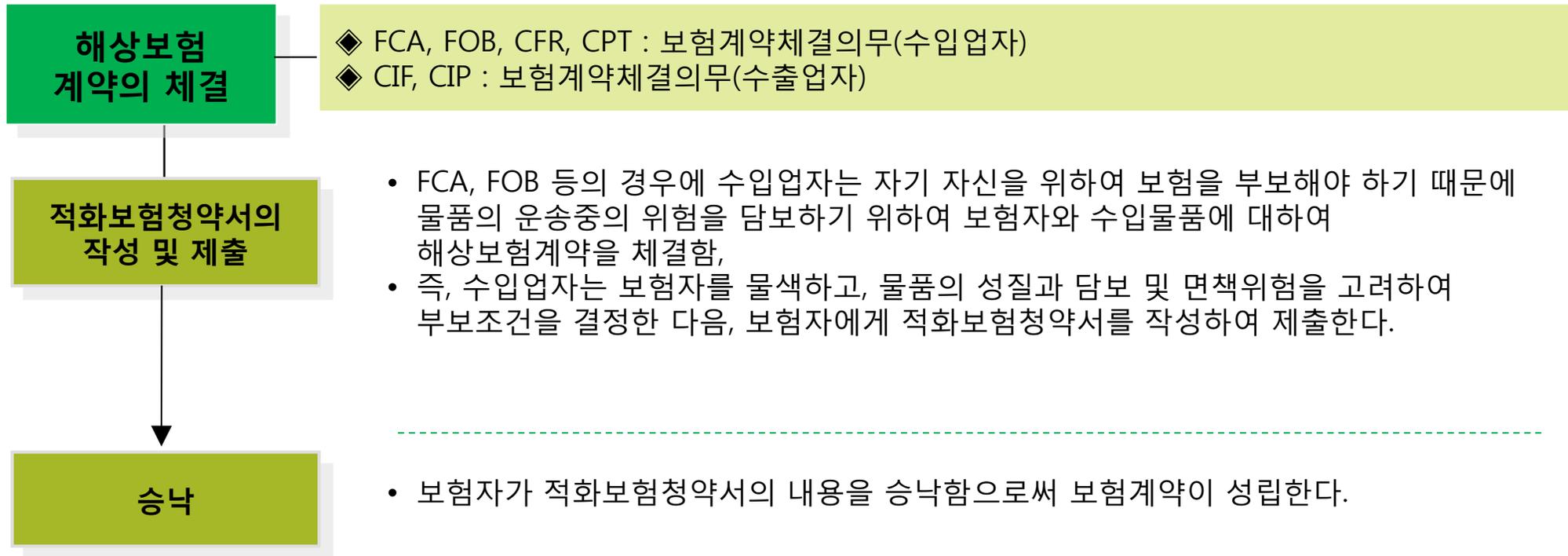
- FCA, FOB 등의 경우에 수입업자는 수출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을 물색하고, 인도시기에 맞추어 운항일정과 운임을 고려하여 운송조건을 결정한다.
- 운송조건을 결정한 다음, 선적요청서(S/R)를 작성하여, 구두, 전화,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운송인에게 신청한다.

승낙 (booking)

- 운송인이 선적요청서의 내용을 승낙함으로써 운송계약이 성립한다.

2. 수입절차

■ 보험계약의 체결



2. 수입절차

■ 선적서류의 내도

- ▶ 수출업자가 물품선적후, 환어음에 신용장상의 요구서류(선적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은행의 매입을 통하여 발행은행에 제시하면 발행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의 도착 사실을 수입업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선적서류의 내도

발행은행은 수출지의 매입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선적서류의 도착사실을 수입업자(발행의뢰인)에게 통지한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행요청

- 수입물품이 선적서류보다 목적항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에 선적서류 없이 물품을 인수하기 위하여 발행은행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한다.

L/G의 발행

- 발행은행은 선적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모든 책임과 추후 선화증권의 원본이 도착하면 이를 운송인에게 인도할 것을 발행은행 자신이 보증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수입업자에게 발급하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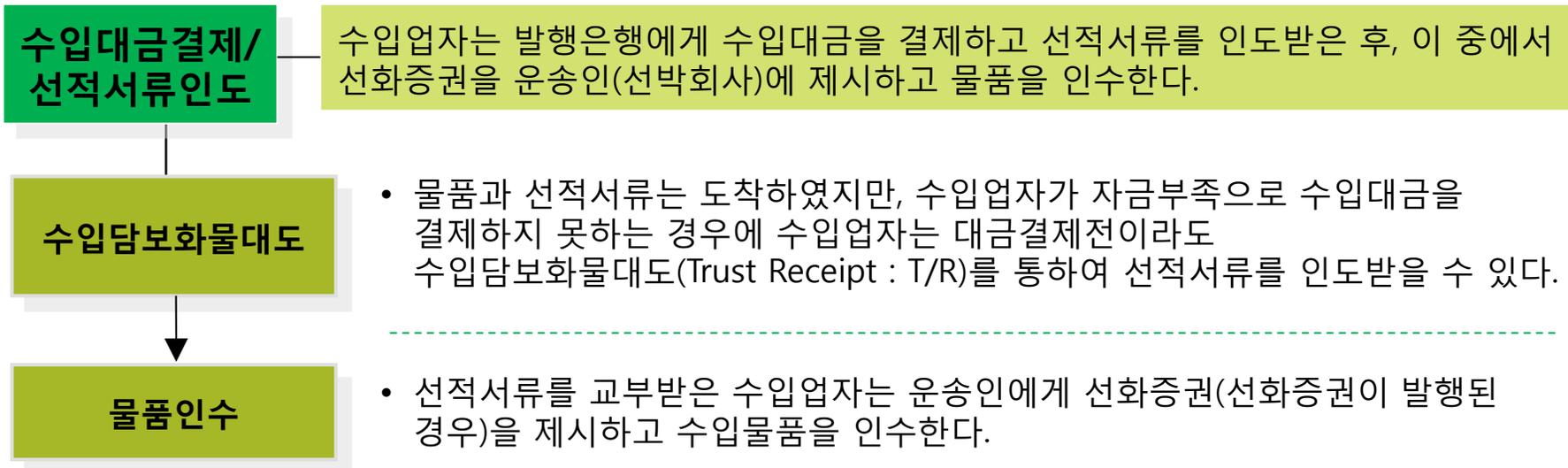
L/G 제시와 물품인수

- 양당사자는 계약성립에 대한 증거로서 합의된 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한 후, 각각 한 통씩 보관함
-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될 필요는 없지만,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여 상호 교환해 두는 것이 일반적임

2. 수입절차

■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의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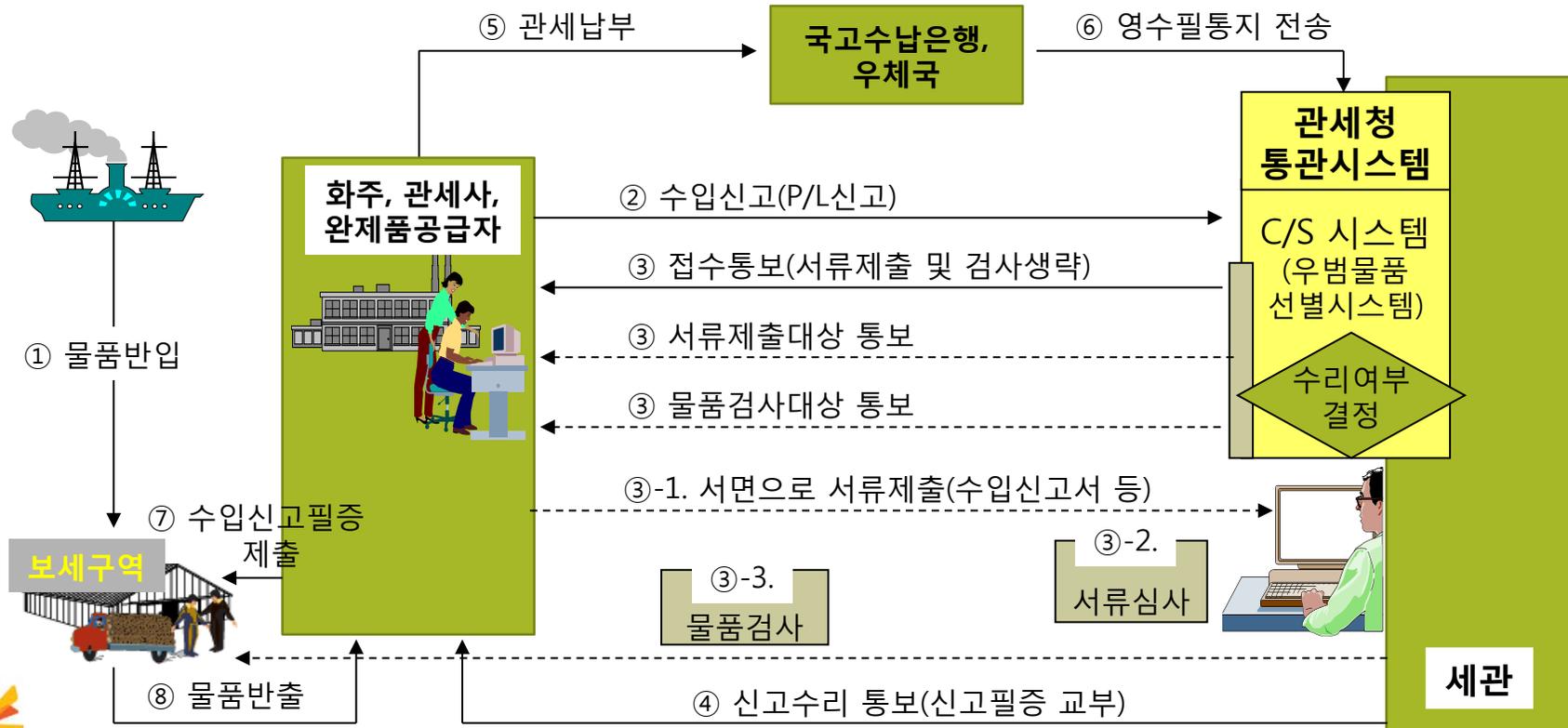
▶ 수입업자는 발행은행의 선적서류 도착일 다음날로부터 7은행영업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는다.



2. 수입절차

■ 수입물품통관

- ▶ 수입통관절차란 수입신고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 ▶ 수입업자는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함으로써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한다.



2. 수입절차

■ 무역클레임 및 중재

▶ 무역클레임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위반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클레임 (Claim)

- 품질에 관한 클레임 : 품질불량, 품질상위, 변질변색
- 수량에 관한 클레임 : 수량의 감소, 감량, 부족
- 포장/화인에 관한 클레임 : 포장불량, 화인누락
- 선적에 관한 클레임 : 지연선적, 부적
- 운송에 관한 클레임 : 환적, 취급불량, 분실, 도난, 파손
- 보험에 관한 클레임 : 부보태만
- 결제에 관한 클레임 : 대금미지급, 부정송장

클레임의 해결방법

-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으로는 양보/화해/타협/협상(Negotiation)알선(Mediation)조정(Conciliation)중재(Arbitration)소송(Litigation)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분쟁발생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중에서 무역거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쟁해결방법은 중재라고 할 수 있다.